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결성식 자료집**

1995. 3. 15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하나

딸들아.

혹시 언젠가 “아이들에게는 권리가 없고 어른에게만 권리가 있다. 어른은 아이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 하렴.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 오래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많은 피를 흘리면서 너희를 위해 싸웠고,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라는 찬란한 선물을 너희를 위해 만들었다. 이 지구가 멸망될 때까지 영원히 기록될 아주 아주 중요한 약속을.

너희, 그리고 전세계 어린이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만약에 훌륭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이 약속을 알게 되면 사는 일이 수월해지고 커다란 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겠지.

하지만 어린이를 제멋대로 다루고 싶어하는 거짓말장이 어른들은 너희들에게 거저 이 선물을 주지는 않을거란다. 그래서 전세계의 어린이들은 이런 훌륭한 선물이 있다는 것조차 아직 모르고 있는 거란다.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하여 딸들아,

이제부터 ‘권리’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해다오.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권리의 도움을 받으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신으로 가득찬 자유인이라고.

권리를 생각하는 너희는

더이상 ‘여자’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권리를 생각하는 너희는

더이상 ‘아이’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서준식님(인권운동사랑방대표)의 글

<어린 딸들에게> 중에서

연대회의가 만들어진 과정

9.25 12.20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하 조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되었고 1994년 현재 159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12월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고, 조약 44조 1항, "조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그 후 5년마다", "조약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에 따라 94년 11월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보고서는 '유엔아동의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심사에 정확을 기하고 더 풍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민간단체보고서의 제출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홍보와 교육의 부족 때문에 조약의 비준과 효력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이번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도 대중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다.

한국정부의 보고서 제출에 관련된 정보를 준 것은 외국의 한 인권단체였다. 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참가를 통해 교류하게 된 이 단체의 이름은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민간단체그룹(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이 단체는 이름이 나타내듯 조약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수십개 국제인권단체의 협의체(coalition)이다. 조약의 초안이 한창 심의되던 지난 83년,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를 위해 일해오던 수십개의 국제인권단체가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조약 작성작업에 참여하였다. 89년 11월 20일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 채택된 후 조약의 실시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이 단체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단체가 우선적으로 하는 일은 민간 인권단체와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정보흐름과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며, 연락업무의 하나로써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RNET) 소속 '인권운동사랑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왔다.

"한국정부가 94년 11월에 영문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올해 10월 16일 부터 20일까지 사전회의(pre-sessional)를 제네바에서 개최하여 한국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질문서를 작성한다. 이 회의는 비공개이므로 한국정부대표는 참석할 수 없지만 민간단체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의 민간단체의 대표는 약 3시간 동안 위원들과 대화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마지막날 한국정부에 보낼 질문지가 작성되고 한국정부는 본회의가 열리는 96년 1월 이전에 서면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9시간, 즉 하루반의 시간이 한국정부보고서 검토에 주어지는데 이때 민간단체는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위원회가 질문서 작성을 위한 사전회의를 10월 16-20일에 열게 되므로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민간단체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한국정부보고서 영문본, 민간단체보고서 작성지침(A Guide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Reporting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필리핀, 노르웨이, 영국 등 몇개 나라의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보고서의 복사본을 받아본 인권운동사랑방은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민간단체보고서 제출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여러단체에 제안하였다. 그후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95년 2월 9일:

- '아동의 권리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차 준비모임
- 8개단체, 개인 4명 참석
- 결정사항-'아동의 권리조약'의 교육과 홍보효과를 위하여 아동대신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으로 부르고 모임의 명칭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가칭)'로 한다.

2월 21일: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 회의
- 참가단체점검- 21일 현재 주관단체 8개, 참관단체 1개, 개인참여 2인
- 예산, 참가단체 권리와 의무, 사업일정, 보고서 작성의 연대회의 사업검토

3월 3일:

- 1차 필진모임 - 집필영역분담, 대표집필자 선정
- 참가단체점검- 3월 3일 현재 주관단체 12개, 참관단체 4개, 개인참여 3인

3월 11일:

- 2차 필진모임
- 참가단체점검- 3월 11일 현재 주관단체 13개, 참관단체 4개, 개인참여 4인, 기타단체 1개
- 각 집필영역에 관한 세부토론, 집필일정 확정
- 연대회의 공식결성결정, 공동대표확정

3월 15일: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결성식 및 기자회견

* 이후 지속적인 관련단체와 개인의 참가를 적극 권유, 환영합니다.

연대회의 구성

공동대표

이오덕 (교육학자/우리말연구소 소장)
 이윤구 (서울평화교육센터 원장/한국선명회 회장)
 주정일 (아동학자)
 한승헌 (변호사)

실무대표 : 이기범 (숙명여대교수, 교육학과, 공동육아연구회)

실무간사 : 류은숙, 김정희 (인권운동사랑방)

참가단체 :

아시아 종교인

| | |
|-----|---|
| 주 관 |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공동육아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스리기선교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열린글 나눔살터 ○ 인권운동사랑방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X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자원활동가연합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위원회 |
| 참 관 | 또 하나의 문화(교육소모임) 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부모연대 |
| 개 인 | 노혜련(숭실대 사회사업학과) 안창도(교육민회) 이용교(한국청소년개발원) 장호순(사회교육원) |
| 기 타 | 성폭력상담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서울지역 공부방 연합회

사업계획과 일정

민간단체보고서 작성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문제에 대하여 관련연구자와 현장활동가가 쌓아온 문제의식과 대안을 효과적으로 모은다.

보고서는 문제점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권고안'과 '주요질문'을 포함한다.

후속활동

보고서 제출이후 10월에 열릴 제네바의 회의에 참석하여 민간단체의 의견을 개진한다.

보고서심사와 결과, 실현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한다.

정부-민간단체토론회제안

연대회의 활동의 목적은 '생산적인 토론'을 통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개선을 위한 '협력'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민간단체간의 토론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연대회의는 민간단체보고서 작성 이후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출판, 홍보사업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을 널리 홍보한다.

홍보물제작, 연대회의의 활동보고와 정부-민간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자료집 발간, 5월 어린이달에 신문사와의 기획시리즈 등을 추진한다.

| | |
|--------|-----------------------------------|
| 3월 초 | 집필분야, 집필팀을 구성. 세부계획 완성 |
| 3월 중순 | 연대회의의 결성행사와 기자회견 / 홍보물제작 |
| 4월 중순 | 한글원고 초고 제출 |
| 4월 말 | 초고검토 |
| 5월 중순 | 한글원고 보완 완료 / 어린이달 기획시리즈 |
| 5월 말 | 영문번역, 감수 |
| 6월 중순 | 정부-민간단체 토론회, 공동기자회견 / 유엔에 보고서 제출 |
| 10월 |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위원회' 회기전실무그룹회의 참석 |
| 96년 1월 | 본회의 참석과 후속활동 |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민간보고서 집필 방향

1. 정부보고서의 문제점

우리 정부는 지난 1994년 11월에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정부보고서를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국제인권조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 의지의 표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비판을 정부가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부가 국내의 법과 정책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조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법과 정책을 수정하고 수행하겠다는 것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보고서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 정한 보고의무를 완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보고의무의 목적은 아동권리위원회와 다른 조약 체결국 정부들이 조약이 제시한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보고서가 바로 이러한 보고의무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정부보고서의 기본 입장, 내용, 그리고 작성과정에서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정부보고서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정부보고서의 입장은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방향의 제시를 촉구하고 있는 인권조약의 기본 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보고서는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있고, 사회와 국가는 단지 보조 역할자로서 이차적 책임을 감당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대상 어린이 중심의 정책서술에 치중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어린이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 제도와 정책방향의 설명은 부족하다. 또한 "어린이는 양육의 대상일 뿐이며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우리사회의 인식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와 방법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부보고서는 조약의 조항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조문을 나열하는 데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조항이 실질적인 권리보장의 수준과 일치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법조문을 제시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 우리 정부의 보고서는 실제적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보고서는 조약을 실행하기 위해 채택한 사법절차와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구체화해야만 한다.

셋째, 정부보고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와 그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정보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관련법조문의 상세한 서술과는 대조적이다. 목표와 예산을 국제수준과 비교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또 비교가능한 자료의 제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장수준을 누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넷째, 정부보고서의 작성과 제출과정에서 나타난 폐쇄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홍보 부족때문에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의 내용은 물론 그 비준과 효력발생조차 국민들과 아동, 청소년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정부는 이 조약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NGO)들에게 정부보고서의 준비와 제출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해당 정부가 정부보고서의 준비와 제출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공적토론의 기회로 삼아서 관련 민간단체 그리고 국내기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보고서 작성과 제출에서 나타난 폐쇄성은 이러한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2. 민간보고서 집필의 방향

민간보고서를 준비하는 목적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자료를 보충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실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관련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파악한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상황과 그 개선방안을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알린다.

셋째, 국내에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홍보하고, 그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식과 활동의 폭을 넓힌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I. 일반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조약 제 3조)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가족 단위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법적, 행정적 절차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아동의 인권, 교육, 복지

를 위한 책임은 가족,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2. 권리조약의 기본 조항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 보장이 인식에서나 실제에서 가장 미흡한 조항들이 의사능력 형성이 있는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조약 제 12조)과 표현의 자유(조약 제 13조),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조약 제 14조), 결사와 집회의 자유(조약 제 15조), 사생활의 보호(조약 제 16조)이다.

정부보고서도 이러한 조항에 대한 국내 관련 법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조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활발한 토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각종 법규, 행정절차, 학교 교칙을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II.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아동들에게 바람직한 가정환경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다음 영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입양

1) 입양은 합법적인 기관과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입양은 단순히 신고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해 양 부모가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가를 사정하고 교육한 후 입양허가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조약 제 21조 1항)

2)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입양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조약 제 12조)

현재 아동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의 나이가 15세 미만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다.

3) 입양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조약 제 7조 1항)

4) 파양과 친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금지해야 한다. (조약 제 21조)

5) 입양부모의 자격을 완화하고 경제혜택을 주는 현 제도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국내입양 건수를 늘리고자 하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조약 제 21조)

2. 시설보호 아동의 권리 보장

1)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소자 비례 지원 방식은 시설의 대형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가정을 대리한다는 시설 보호의 취지에 어긋난다. 정부보조금은 최저생계비 정도로 현실화하고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해야 시설보호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에 의한 시설운영의 실태 감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III. 복지와 보건

아동복지와 보건을 위하여는 다음 영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건강(제 24조)

의료보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빈곤가정의 아동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2. 아동보호(제 18조 3항)

부모가 취업 등의 이유로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극빈층의 아동만을 긴급구제 형식으로 책임지고, 나머지 아동의 보호는 부모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방치되기도 한다. 또 저학년 취학 아동도 방과 후에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3. 경제적 착취 금지(제 32조)

근로기준법들의 노동법은 최소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아동과 임시고용 아동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4. 약물 오남용(제 33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각성제마위의 약품과 술, 담배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청소년들을 치료하는 시설이 없다.

5. 장애아동의 권리보장(제 23조)

정부보고서에서 장애아 출현율이 0.76%라고 제시된 수치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장애의 유형과 수준별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이들의 재활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에서 장애인에 차별이 극심한데다가, 법에 의한 정부고용을조차 정부 당국은 지키지 않고 있다.

IV. 교육과 문화

조약 제 28조, 29조, 31조에 보장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교육과 문화영역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1.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선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 보장

2. 교육권과 교육기회의 보장

1) 학령전 아동에게 보편적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 초등학교 급식의 전면 실시로 실질적 무상초등교육의 보장

3) 과밀학급 해소

4)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의 지원

- 5) 중등학교의 무상교육 확대
- 6) 실업계 고등학생의 교육권과 취업기회 보장
- 7) 근로 청소년을 위한 학교제도의 확대
- 8)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특수학교와 통합교육의 확대

3. 교육투자 확대

4.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이 될 수 있도록(제 28조 2항) 각급 학교의 학칙이 보장해야 하며, 학생들을 처벌해야 할 때에 의사형성의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약 제 12조 1, 2항)

5.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과 시설 확보

V. 특별보호조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하여 다음 영역의 실태 파악과 개선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1) 아동들을 가정과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와 방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시급 하다. (조약 제 19조 1항)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유일한 법 조항인 아동복지법 제 18조 제 9호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 또 폭행교사가 학생을 구타하여 두개골 골절로 죽게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가 적용되지 않았다(서울고법 1978년 6월 23일자 판결).

2)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조약 제 19조 2항)

3)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 심리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 (조약 제 39조)

4)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제 34조)

가정이나 사회에서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효과적으로 예방,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 성적학대가 일어 날 경우 피해자를 격리, 보호하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리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없다.

아동의 권리 - 빈곤 322쪽
UN 24
923.

1100074 학도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란

1995-170.2.3.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하 조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고 1994년 현재 159개국에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이 조약의 채택배경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아동 환경의 악화가 있다. 즉 개발도상국에서는 5세 미만의 아동이 해마다 1,400만명이나 죽어간다고 하며 ‘절대적 빈곤’하에 있는 아동은 1억 5,000만명에 달한다. 선진국에서도 아동학대, 마약, 성적착취, 소년범죄 등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이야말로 어른들이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는 절실함이 이 조약에 담겨 있는 듯하다.

이 조약은 어린이의 지위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정의할 뿐 아니라,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함께 포괄한 유일한 국제인권조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어린이를 분명히 권리의 주체로 못박고, 인류 모두가 자신의 선량함과 어린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의 권리에 관한 모든 지혜를 결정시킨 세계사적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성립에 이르는 역사

1. 아동을 바라보는 과거의 시각

고대. 중세 이후 유럽에 있어서 아동은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잘해야 ‘미완성의 어른’ 정도로 파악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몇몇 예외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아동은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 ‘길들이기’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미완성의 어른’이라는 아동관에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기 사상운동의 선봉이었던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의 체벌이 판을치는 비인도적인 학교교육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이 자유로운 인간임을 강조하면서 그 존엄에 걸맞게 처우할 것을 주장했다.

이리하여 르네상스 시대 이래 사람들은 적어도 사상적으로만은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권리와 자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 말하는 '아동'은 어느 특정 사회 계급에 속하는 '아동'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모든 아동이 권리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동이 신분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18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장 자크 루소가 가장 명확하게 전개했다. 루소는 "아동의 발견자"라고 평가된다.

그는 교육소설 <에밀>의 머리말에서 아동의 독자성, 아동으로서의 완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즉 '인간으로서의 아동'에 고유의 가치나 인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주장이 나온 셈이다.

루소의 교육사상은 그 후 페스탈로치나 플레베르 등 근대 교육사상가들에 의하여 심화, 발전되어 왔다. 그리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신교육운동'은 '아동중심의 교육' 등 주장을 통해 학습주체로서의 아동의 인간성 존중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하 제네바선언)

1914년에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특히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입은 피해는 심각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두 번 다시 이런 참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이 평화적 사회의 지속과 발전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결의로써 1920년 국제연맹이 결성되었다.

국제연맹은 1924년 9월 26일 제 5차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는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짐을 인정하고 인종, 국적 또는 신조에 관한 일체의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래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며 또한 자신의 의무로서 수락한다."라고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본문은 5개조로 이루어진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제 1조.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수단이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주어져야 한다.

제 2조. 아동이 기아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지체아나 비행에 빠져있는 아동은 그 회복과 갱생을 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없는 아동에게는 주거가 주어져야 한다.

제 3조. 아동은 재난시 가장 먼저 구제되어야 한다.

제 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 5조. 아동은 그 능력을 널리 인류동포를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길러져야 한다.

이 선언에 "아동에게 최선의 것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이옥고 '아동의 권리선언(1959)'에까지 계승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네바선언'에는 제 2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 보다

는 차라리 일반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즉 이 선언은 아동의 생존을 위한 최저보장기준의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제네바선언'의 특징이다. '제네바선언'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 아동의 권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국제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3. 세계인권선언

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인류의 큰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하여 결성된 국제연맹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20년도 못되어 인류는 제 2차 대전을 일으켜 1300만 명이나 되는 아동이 전쟁에서 죽어갔다.

인류를 불행의 밑바닥까지 물고갔던 제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유럽에는 영원한 평화를 확보하고 사람들을 두 번 다시 독재나 압제의 불행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새로운 정치의식이 힘을 얻고 있었다. 그 하나의 결과가 유엔헌장(1945년 6월 26일 서명, 같은 해 10월 24일 발효)이다. 이 헌장에 의하여 유엔이 창설된 것이다. 국제연합 가맹국들은 '평화'와 '인권'을 그 무엇보다도 존중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

창설된 바로 이듬해인 1946년 유엔은 그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선언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4년의 '제네바선언'이 그랬듯이 전세계 사람들이 튼튼히 연대하기 위한 중심핵으로서 '아동의 권리선언'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 요청을 받아 경제사회이사회는 '제네바선언'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아동의 권리선언'작업에 앞서서 경제사회이사회는 해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있었다.

'세계인권선언' 기초작업이 바로 그것이었다.

유엔발족과 함께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인권위원회는 탄생과 동시에 국제인권장전의 작성작업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무시와 국제적 침략행위의 결과가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다는 교훈을 딛고,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적 협력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인식아래 '권리장전'은 요구되고 있었다. 그 작성과정에서 '권리장전'은 선언, 조약, 실시수단의 세가지로 나뉘게 되었으며 그중 선언 부분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으로서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진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선언에는 자유·평등, 차별금지, 생명·신체의 안전, 사생활의 보호, 이전·거주의 자유, 재산권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등 시민·정치적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이들과 함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권, 생활보호, 어머니와 아이 보호, 교육권, 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 등 경제·사회적 권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계인권선언' 속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두개이다. 즉,

첫째, 제 25조 <생활보장> 1항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서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전제하면서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호 및 원

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아동은 적출이든 아니든 같은 사회보장을 받는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제 26조 <교육의 권리> 1항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항에서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아울러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교육목적을 밝히면서 3항에서는 “부모는 아동에게 줄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아동의 권리선언’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4.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선언’

(1) 성립과정

1946년부터 시작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헌장의 작성작업은 실로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선언’이 성립함으로써 1959년 11월 20일에 끝난다. 성립에 이르는 길고도 복잡한 과정의 연대기는 대략 아래와 같다.

- * 1947년 10월 제 2차 UN총회 사회위원회(제 3위원회)에서 헌장 성문화를 위한 기획 시작
- * ‘제네바선언’의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헌장 작성을 결정. 사회위원회가 사무총장에게 ‘아동권리선언’초안 준비를 요청.
- * 1950년 사무총장, 사회위원회에 전문 및 8개 조항으로 된 선언안을 제출. 이 전문에서는 ‘제네바선언’의 원칙인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지닌다”는 언명의에 “아동은 법률상의 미성년인 까닭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포함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선언’을 공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인권’으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 * 사회위원회는 이 사무총장안을 심의, 경제사회이사회에 널 선언안을 작성했다. 전문과 10개조항으로 된 이 안은 명칭을 ‘헌장’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선언’으로 정했으며 특히 전문에서는 “아동에게 불가결한 권리를 승인한다.”고 하면서 “아동이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목적을 위하여 인권으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런 점에서 아동은 구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제네바선언’과 큰 차이가 난다. 이 안은 1950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 * 1950년 경제사회이사회는 위의 안을 심의한 결과 산하에 있는 인권위원회로 보내고 의견을 구하려했으나 인권위원회는 이를 1957년까지 미루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조약화시키기위한 초안 작성작업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여러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따로 냄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 * 1957년 제13차 인권위원회에서 위 초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처음으로 있었다. 이 시점에서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은 아동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또한 아동은 법의 주체이면서도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비추어 ‘아동의 권리선언’의 제정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러나라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 다만 이 문서를 단순한 선언으로 할지 조약으로 할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은 권리의 열거에 그치지않고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의무화시키기 위하여 조약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영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은 각국의 법적 사회적 현실로 보아 조약화는 무리라는 주장을 했다.
- * 결국 인권위원회는 각국의 의견을 모아 ‘선언’으로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다시 논쟁이 있었는데 미국, 영국 등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행조치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만으로 된 간결한 선언만으로 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소련, 폴란드 등은 일반적인 원칙에 머물지 않고 권리내용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정하고 아울러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약화가 이루어지지않게 된 조건에서 폴란드가 제출한 두가지 수정안, 즉 “각국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아동의 성장을 가능케하는 기회 및 편의를 법률로서 부여해야 한다”와 “가정이 없는 아동에 대해 사회적 및 공적기관에 특별한 보호의무를 과해야 한다”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것은 아동의 사회권적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정이다. 폴란드는 ‘아동의 권리선언’ 초안 작성단계에서 성립까지 한 걸같이 조약화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서 ‘아동의 권리선언’을 알찬 것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나중에 폴란드는 ‘아동의 권리조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UN인권위원회에서 마련된 ‘아동권리선언’(안)은 1959년 UN 제14차 총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2) ‘아동의 권리선언’의 내용

서문

- * 기본적 인권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관한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
- *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차별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는 원칙 재확인
- * 아동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적 보호를 포함하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 *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진다
- * “아동이 행복한 삼리를 보내고 또한 자신과 사회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이 선언을 공포하고 부모, 개인인 남여, 민간단체, 지방행정기

기관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의 인식과 준수를 위하여 입법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1조: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이 선언에 규정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2조: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신체적 지능적 도덕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와 편의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최고의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 3조: 성과 이름 그리고 국적을 가질 권리
- 4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5조: 신체 정신 사회적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별한 치료 교육 보호를 받는다
- 6조: 아동은 인격의 완전하고도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애정과 이해를 가능한 한 부모로부터 가정 내에서 받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에서 키워져야 한다. 가정이 없는 아도에게는 특별한 양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7조: 교육을 받을 권리
- 8조: 아동은 모근 상화에 있어서 최초의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한다.
- 9조: 아동은 방임,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매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10조: 모든 형태의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관행으로부터 보호됨과 동시에 이해 관용 우에 평화 사회동포의 정신 아래 그리고 그 힘과 재능을 인류를 위하여 바친다는 의식 아래 키워져야 한다.

'제네바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선언은 '제네바선언'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풍부케 한 '아동의 권리선언'은 아동을 단순히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동을 권리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는 입장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의의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처럼 '아동의 권리선언'도 매우 이상적인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면서도 그 자체로서는 법적 강제력을 결합함으로써 아동인권의 실질적인 실현과 보호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선언'은 어디까지나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리하여 '선언'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5.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제정에의 발걸음

(1) '국제인권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을 이끈 것은 '세계인권선언'을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UN 발족과 함께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1948년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장전'의 작성작업에 들어가 있었다. 기본적인 인권의 무시와 국제적인 침략행위의 결과가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다는 교훈을 딛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협력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인권장전'은 요구되고 있었다. 그 작성과정에서 '인권장전'은 선언, 조약, 실시수단의 세부분으로 나뉘게 되었으며 그중 선언부분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으로서 채택되었다.

이 '세계인권선언'을 조약으로 만드는 작업과정에서 여러 나라들,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하나의 조약으로 민들기가 어려워 권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두개의 조약을 만들게 되었다. 하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다. 그리고 B규약에 관해서는 별도로 사형폐지와 개인이 당한 인권침해를 UN에 직접 제소하는 절차와 이를 심사하기 위한 인권이사회(B규약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가 만들어졌다.

이 세가지 조약은 모두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은 1976년 1월에,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과 선택의정서는 같은 해 3월에 각각 발효했다.

두가지 규약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등의 이념과 정신을 확인하는 거의 같은 내용의 전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 1부에서 인민의 자결권을 규정하고 제 2부에서 규약에 담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계약국이 져야하는 노력과 의무,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평등, 공공복지의 관점에서의 인권제한, 인권의 파괴 혹은 부당한 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두가지 규약은 제 3부의 실제 규정에서 각각 구체적인 권리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은 노동권, 좋은 노동조건 확보권, 단결권, 생활수준 확보권, 교육권, 문화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은 생존권, 고문 등의 금지, 노예, 강제노동금지, 주거, 이동, 출국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동의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이 두규약에 가입했다.

(2) '국제아동의 해'와 '아동의 권리선언'의 조약화 작업

유엔은 '아동의 권리선언(1959)' 20주년에 해당하는 1979년을 '국제아동의 해'로 정하여 어린이의 인권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1978년 2월 7일 폴란드 정부는 제 34차 인권위원회에 대해 '아동의 권리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고, 이안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콜롬비아, 요르단, 세네갈, 시리아, 아랍공화국, 페루 등 7개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3월 8일의 인권위원회 결의는 59년 '아동의 권리선언' 전문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

은 것과 '선언'의 10개 조항에다 9개조의 실시조치 조항을 더한 총 19개 조항으로 된 조약원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제출케 하여 가능하면 '국제 아동의 해'인 79년에 조약으로서 채택한다는 것이었다. 1979년 3월까지 유엔에 모아진 여러나라의 의견은 총 57건, 의견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하나 이 조약 초안에 찬성하여 1979년에 조약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부류로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아프리카, 중남미 나라들이 여기에 속했다. 다른 하나는 '선언'과 '조약'과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아동의 권리선언'을 그대로 조약화하는 데 반대하거나 '국제 아동의 해'를 계기로 진행중인 여러가지 연구성과를 기다린 후에 조약화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대세는 후자 쪽이었고 1979년 조약 채택에는 부정적이었다. 결국 1979년에 조약을 만든다는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조약화를 위한 작업그룹은 1979년에 만들어졌고 의장에 폴란드의 아담 로파트카교수가 선출되었다. 그는 1989년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채택 때까지 한결같이 조약을 만드는 일에 지도적 역할을 했다.

1979년 10월 5일 폴란드는 전문과 28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약 수정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같은 해 1월 16일부터 4일동안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바르샤바회의(서유럽 11개국, 동유럽 8개국, 유엔관련기관 3단체)'의 성명과 결의를 반영시켜 폴란드 정부가 작성한 것이었다. 이 수정초안은 이후 해마다 열린 작업그룹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는 필요한 가정의 원조를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국가 및 부모는 그 아동이 자신의 행복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는 언제나 그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권리를 존중한다.(의견표명의 권리)"는 내용은 거의 그대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반영되어 있다.

10년 동안의 기나긴 조약화 작업을 거쳐 전세계의 인권에 관한 모든 지혜를 결정시킨 결과물인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완성되었다. 1989년 11월 20일, 이날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가 살아있는 한 영원한 기억될 것이다.

'아동의 권리선언' 채택 이후 30년이라는 세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채택 이후 실로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에 '구제·보호 받아야 할 아동'에서 '권리의 향유주체로서의 아동', 그리고 다시 '권리의 행사주체로서의 아동'으로 아동관은 빠른 속도로 비약적으로 변해왔던 것이다.

가정상실 어린이(청소년)의 문제에 관한 집필 개요

강 명 순 (부스리기선교회 총무)

가정상실어린이는 네가지 범주가 있다.

첫째,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에게 고통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둘째, 부모가 부성이나 모성을 포기하고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으로 가출을

하여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셋째, 부모가 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병이나 사고, 빈곤과 무능력, 알콜중독

등으로 사실상 아이가 가정에서 올바르게 양육되지 못하는 경우

넷째, 어린이(청소년) 자신이 가정을 포기하고 가출을 하여 독립적이거나 방랑

하며,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제도적, 사회적으로

가정회복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범위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상황과 문제점을 고발하고 그 대책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집필을 할 것이다.

참고로 위의 어린이들의 개괄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48만명의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10만명의 청소년들이 실형을 받고 감화원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 강간범의 50% 이상이 10대라고하고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위가 2년사이에 70%나 급증하였다. 국교생 45%가 중고생 74%가 가출충동을 느끼고 청소년 85%가 자살충동을 경험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부부중에서 7쌍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며 결혼한지 5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제일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5년안에 1-2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부모들이 서로 양육을 포기하겠다고하여 방치 되고 있거나 아동복지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스리기선교회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가출하여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빈민, 공단 농어촌 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부모가출이 일어나는 시기도 6세이전이 34% 12세 이전이 47%로

부모가 가장 주의깊게 보살피고 사랑해야하고 보호 받아야 할 나이에 방치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방치된기간도 5년이상 14년까지 아주 오래된기간이라고 대답한 아이들도 결혼가정 사례연구 100명중 49명이나 된다.

주간한국 10월27일자해보면 서울 남부지역에 있는 국민학교 어린이 한한급의 1/3이 결혼가정의 아이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회보장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존중받을수 있는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받도록 모두모두 시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것이다.